

「비상대비자원관리법」 大觀

(2021.1.2)

□ 용어의 의미

1. 비상사태(충무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 민방위사태
2.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주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 주관, 범위(국지도발~전파확대), 내용등
4. 인력자원 ↔ 인력동원, 물적자원 ↔ 물적동원

□ 법령의 흐름파악

1. (동원)대상자원(인력자원, 물적자원) -> 중점관리대상자원(인력,물자,업체)
/ 비축물자
* 인적자원 : 병력자원(국방부), 인력자원(행정안전부)
2. 대상자원 -> (자원조사) -> 중점관리대상자원 -> (자원조사)
-> 비상대비훈련대상 -> 보상, 치료, 처벌 등
3. 중점관리대상인력·물자, 비축물자 사용시기 ->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등 -> 보상 및 치료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국무총리)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도(행정안전부장관, 주무부장관)·심사(행정안전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주무부장관 -> 비상대비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비상
대비업무수행실태 확인·점검
6. 비상대비업무수행 기관 또는 업체의 장 ->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등에
자료제출 협조요청

용어 -> 조문 -> 법령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 제정목적 : 비상사태에 인력·물자 활용을 위한 평시 대비

1. 통합방위사태에 중점관리대상인력 참여 및 물자 사용절차
2.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선포시 비축물자 사용 절차

□ (동원)대상자원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 훈련 및 동원

1. 대상자원 : 법제2조로 정함 / 대통령 X, 심의·승인 X

가. 인력자원 : 1종(중점관리업체종사자) : 대한민국 국적, 남녀불문, 나이불문

2종(기술면허 또는 자격취득자, 과학기술자)

* 기술면허·자격취득자 : 대한민국 국적 + 19~60세

* 과학기술자 : 대한민국 국적+19~60세+자연과학+석사이상+연구기관 종사자

☞ 법률적 효력발생 조건 숙지

나. 물적자원(물자, 업체) * 대통령령으로 추가 정할 수 있음

* 비상사태시 생산 및 유통의 통제가 필요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
물자와 업체

2.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계획수립-훈련

가. 중점관리대상자원(인력, 물자, 업체)

대상자원중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

나. 지정절차, 계획수립 및 훈련

- ① **소요계기**(군수 : 국방부, 관수 : 중앙행정기관, 민수 : 지방자치단체)
 - 군사작전지원, 비상시 정부기능유지·재난의 긴급복구·국민생활안정
- ② **동원소요 심의, 조정** :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 예) 라면 : 100개 소요(민수 70개, 군수 30개)
 - > 라면회사 자원조사
 - > 생산능력(농심 40개, 삼양 30개, 오투기 20개)
 - * 10개부족 : 민수소요 10개 빵으로 대체
- ③ **자원일당 및 배분** :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약 6,800여개 업체)
 - > 농심, 오투기, 삼양라면 중점관리업체 지정 / 임무고지
 - > (중점관리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약 500여개 업체)

구분	임명대상
공무원 직위 (강제)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 (자체선발) -----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3.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 4. 시·도 교육청 (행정안전부 주관 선발)
중점관리 업체 (임의)	1. 중점관리업체중 국무총리가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고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대상업체 지정(임의) 2. 국가기반시설 관리업체등(영제14조)
자격조건	1. 대위이상 + 임명할 당시 전역후 3년 이내(현역 응시가능) 2.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예비군지휘관 임용 결격사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예비군법」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영제14조)	예비군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영제14조의2)
군 인사법(제10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2.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거나(or)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의 처벌 또는 「형법」 제356조(공무상의 횡령, 배임)에 처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 : 추행, 간음, 강간, 강제추행, 강도강간, 공연음란등 모든 성폭력범죄 망라]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로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탄핵이란 행정부 고급공무원, 법관과 같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訴追)·심판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비상대비계획 수립(기본~실시계획) = 충무계획 / 협의, 심의, 승인, 통보

구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법제6조의2)	민방위기본법 (법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법 (법제22조)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	시기	5년 단위	-	-
	작성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승인	대통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지침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중앙관서의 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	시기	(통상 5월)	5년 단위	5년 단위
	작성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심의	국무회의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작성) / 국무회의	중앙위원회 심의(확정)
	승인	대통령 (확정)	대통령 (확정)	-
집행계획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통보) 국회(통고)	중앙관서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관사항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전달.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제외)
	시기	(통상 7월말)	9월말	(전년도) 10월 31일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관서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심의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조정위원회 (심의)
시행 (사·도) (안전관리) 계획	승인	국무총리 (확정)	국무총리 (확정)	국무총리 (확정)
	보고,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지사, ① 지방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법제3조5호나목)
	시기	(통상 10월15일)	11.10일	12월 31일
	작성	시·도지사,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지사
실시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	심의	-	시·도 협의(확정)	시·도 위원회(확정)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보고,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법제3조5호나목)
	시기	(통상 11월말)	12월말	2월 말일
실시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심의	-	시·군·구 협의(확정)	시·군·구 위원회(확정)
	승인	시·도지사 (중점관리업체:주무부장관)	-	-
	보고, 통보	-	시·도지사 읍·면·동장(x)	시·도지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법제3조5호나목)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 : 중앙관서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사회단체 및 중요시설의 관리자(민방위법 영제14조)

* 매년 10월말까지 세부집행계획 작성, 시·도지사와 협의, 소속 중앙관서의 장 승인

② 재난관리법제3조5호나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조직 포함)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 (평시)비상대비훈련 = (전시)동원

1. 정상동원 : 동원령 선포시 동원 주무부처에서 사전에 계획된 동원계획에 의거 지정된 자원을 동원
2. 긴급동원 : 사전 계획된 동원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발상황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기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요청
3. 동원 = 훈련명령 발령, 교부절차



□ 보상 : 보상근거, 범위, 시점, 절차 등

1. 신체 : 훈련참가 또는 동원에 응소하여 임무수행중 부상, 사망
2. 재산 : 임무수행 위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 긴급조치(예비군법), 응급조치(민방위기본법), 응급부담(재난관리법)
3. 실비 : 식비, 교통비, 숙박비, 실비(임금상당액) 등

☞ 재해 등에 대한 보상(신체에 대한 보상)

○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 각 법령별 비교

구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법제21조)	민방위기본법 (법제28조)	예비군법 (법제8조의2, 9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법제65조)
대상	훈련중 부상 또는 사망	동원 또는 훈련중 부상 및 사망	동원 또는 훈련중 부상 및 사망	자원봉사자, 응급조치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
보상 근거	-	해당 법령에 별도의 보상규정 반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 유형	(①재해보상금) ㉔부상을 입은 사람 → 공상군경 : 상이등급 1~7급 ㉔사망한 사람의 유족 → 순직군경 (②휴업보상금) : x	①재해보상금 ㉔장애보상금 : ? (전상·공상군경) ㉔사망보상금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② 휴업보상금	①재해보상금(영제21조) ㉔ 장애보상금 (전상·공상군경, 재해보상군경과 그가족) ㉔ 사망보상금 (전몰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 군인재해보상법 적용 ②휴업보상금	(①재해보상금) ㉔ 신체 장애자 ㉔ 사망자의 유족 *배우자, 미상년자녀, 부모, 조부모, 상년자녀, 형제자매 순 (②휴업보상금) : x
보상 책임 /절차	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 (사실확인 요청) → 주무부장관 (확인결과 통보) → 국가보훈처장 (보상심사위원회 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동원 : 국가, 해당 지자체 ② 훈련/업면동장 동원 : 시·군·구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① 보상 받으려는자 수임군부대장 발급 사망 (부상)증명서 첨부 → 국가보훈처 등록 ② 수임군부대장 (사망, 부상증명서 발급시) → 국방장관(확인서작성) → 국가보훈처장 통보	국가의 업무 및 시설 : 국가부담 지자체 업무 및 시설 : 지자체 부담 보상금 지급절차: 민방위법 시행령 제41조 준용
의료 지원	훈련실시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군부대장 또는 수탁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 치료절차: 민방위법 시행령 제44조 준용
의료비 부담	국가 또는 지자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 해야 함, 강제)	국가, 시·도, 시·군·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국가/민간의료시설 : 국가 지자체의료시설:지자체 (국가가 일부 보조 가능)	국가, 시·도, 시·군·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민방위법44조

※ 비자법 부상자 치료 : 의료지원(훈련실시기관의 장), 의료비(국가 또는 지자체)

→ 지자체부담시 국가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강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4조(치료), 제41조(보상) 준용

□ 각조별 시행 책임 : 각조문 1항 반드시 암기

구 분		책 임	비 고
총칙	목적 (제1조) * 비상사태	.	강 제
	대상자원의 범위 (제2조) 인력자원, 물적자원	법령으로 정함	강 제
	비상대비 의무 (제3조)	정 부	강 제
비상 대비 기관	총괄기관 (제4조)	행정안전부장관	강 제
	집행기관 (제5조)	주무부장관	강 제
	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6조) 일부/다른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주무부장관	법 :임의 령 :강제
비상 대비 조치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6조의2) * 5년 / 대통령 승인	국무총리	강 제
	기본계획 (제7조)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무총리	강 제
	집행계획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국무총리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 제
	시행계획 (제9조) 주무부장관 승인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강 제
	실시계획 (제9조의2) 시군구 : 시·도지사 승인 중점관리업체 : 주무부장관 승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중점관리업체의 장	강 제
	기본계획등의 변경 (제9조의3) 원칙/경미한 사항(행정기관, 업체 구분)	계획 수립권자	강 제
	자원조사 등 (제10조) 조사(공무원), 신고(당사자), 제출(관련협회, 단체)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 (중앙장,중앙장소속 지방장, 시·도지사)	임 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제11조) 인력(행정안전부장관), 물자(업체(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위임시)	임 의
	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제12조) 시설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양성, 기술개발	주무부장관 (국무총리 승인)	임 의
	비축 (제13조) 정부비축(법령), 업체비축(대통령승인)	정부비축 → 정부	강 제
		업체비축 → 주무부장관	임 의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제13조의2) 통합방위사태시	정부	임 의
	비축물자의 사용(제13조의3) 비상사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법률	강 제
	보상(제13조의4) * 통합방위사태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 비상사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비축물자 사용	제37조(보상), 제38조(의료지원), 제39조(보상), 제41조(보상기준)	강 제

구 분		책 임	비 고
비상 대비 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교육(제13조의5)	행정안전부장관	임 의
	훈련실시(제14조) 2개부처이상/정부연습 : 국무총리 -> 대통령 1개부처/자체연습 : 주무부장관 -> 국무총리	정 부	임 의
	훈련실시대상(제1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	법령으로 정함	강 제
	훈련의 방법 및 기간(제16조) 문서훈련과 도상훈련	-	-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17조) 인력 : 거주지 읍면·동장 물자·업체 :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등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소속 지방행정기과의 장	강 제
	통시관리 훈련(제18조) 물적자원 관장 주무부장관 -> 국무총리 승인	정부	임 의
	출석등의 의무(제19조) 인력훈련통지서,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받은 사람	강 제
	직장보장(제20조) 위반시 1년, 1,000만원	사용자	강 제
보칙	보상 및 의료지원(제21조) 사망한 사람의 유족/부상자(1급-7급)	보상 : 국가유공자법 치료 : 훈련실시기관의 장	강 제
	실비변상(제22조) 식비·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	대통령령으로 정함	강 제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제23조) 보상청구권 : 손실입은 날부터 5년	정부	강 제
	보조 등(제24조) (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 보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여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정부	임 의
	관계기관의 협조(법제25조) 비상대비업무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장 : 협조요청 행정안전부장관 : 소속직원 파견요청	비상대비업무수행 기관 또는 업체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	임 의
	확인·점검(제25조의2) 비상대비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	임 의
	비밀엄수 의무(제26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비상대비업무 종사자 (과거, 현재)	강 제
	다른 훈련과의 관계(제27조) 병역법>비자법(동시관리훈련) > 예비군법 > 비자법 > 민방위기본법 순	법률	강 제
벌칙	비밀엄수의무 위반(제29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강 제
	출석의무 위반, 직장보장 위반(제30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강 제
	자원조사 등,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훈련통지서 전달 등 (제28조) 지정업체등에 대한 준비조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임명, 비축명령 위반 (제32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강 제
	비축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비축 확인점검 또는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 조치 거부·방해 및 기피한 사람 (제33조)	500만원이하의 벌금	강 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징수 : 주무부장관	강제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숫자

구 분		내 용
인력자원 (기술면허·자격, 과학기술자)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훈련 면제자	생계 곤란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자
	연장자, 기혼여성	56세 이상인 사람(56세 된 해 1.1일 맞이한 사람 포함) 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여성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기본지침)을 작성		5년의 범위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하는 경우		소관 불분명 또는 2개 부처 이상 관련되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시
비상대비업무담당 임명 제외자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업체 물자비축 범위		3개월분
비출물자의 실태보고	물자의 소유자, 업체의 장 →	(주무부장관에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매년 1월31일까지
	주무부장관 →	(국무총리에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매년 2월말일까지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비상대비교육 수요조사		매년
비상대비 훈련의 기간		연 7일(0), 8일(X)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은 8일이상 가능
인력훈련통지서,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		훈련 실시일 7일 전까지(초일 미산입 원칙)
보상시 공상군경으로 보는 등급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 부상 입은 사람
재산상 손실시 보상청구권		5년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보상청구권 소멸)
보상금지급신청서 (시도지사 등 또는 군부대의 장 거쳐 → 주무부장관) 보상금지급통지서(주무부장관 → 신청인에게 송부)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훈련 끝난후 30일 이내 (신청후) 30일 이내 보상금액 결정
(주무부장관에게) 재심 청구 (주무부장관이) 재심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는 1등 합격! 우리는 전공석 석권!